#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

(김석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440 발의연월일: 2024. 8. 30.

발 의 자: 김석기·박대출·신동욱

백종헌 • 고동진 • 박수민

배현진 • 박상웅 • 박준태

강명구 · 서천호 · 김 건

윤한홍 · 임종득 · 최은석

이종욱 • 이상휘 • 인요한

송언석 • 조지연 • 정성국

이달희 · 김태호 · 이철규

박형수 · 김성원 · 우재준

김선교 • 김기웅 • 김기현

박정훈 · 강선영 · 이만희

서명옥 • 유상현 • 김용태

김상욱 • 윤재옥 • 주진우

임이자 • 윤영석 • 이인선

조경태 • 유용원 • 강대식

김위상 • 곽규택 • 안상훈

박성훈 • 조배숙 • 엄태영

정희용 · 장동혁 · 송석준

권성동 • 천하람 • 한지아

조 국 • 박지원 • 이준석

나경원 · 최보유 · 김형동

최형두 · 김미애 · 유영하 차지호 • 이성권 • 김정재 이종배 • 배준영 • 강승규 김도읍 • 박덕흠 • 진종오 추경호 · 김장겸 · 안철수 조은희 • 박정하 • 박수영 김은혜·최수진·김예지 김소희 · 성일종 · 박충권 권영세 · 조정훈 · 서범수 복기왕 • 이주영 • 민홍철 이헌승 · 강민국 · 정연욱 김민전 • 김재석 • 한기호 황운하 · 정점식 · 신성범 김병기 · 김정호 · 김종민 강경숙 · 정춘생 · 허성무 서영교 · 주철현 · 이연희 안태준 • 문금주 • 허종식 박홍배 • 양부남 • 문진석 이개호 · 장종태 · 박은정 어기구 • 박범계 • 김민석 임미애 · 박홍근 · 김선민 김주영 · 이해민 · 박용갑 김재원 • 이춘석 • 서미화 서삼석 · 모경종 · 정동영 이상식 • 전용기 • 이재관 박지혜 • 서영석 • 권향엽 염태영 · 김태년 · 정성호

김원이 · 김영호 · 강훈식 전재수 · 김동아 · 조인철 박수현 • 이해식 • 박 정 정일영 · 임오경 · 추미애 임호선 · 위성곤 · 안규백 주호영 · 김영배 · 이양수 김종양 · 서일준 · 김대식 유상범 · 김승수 · 조승환 권영진 • 박성민 • 정동만 서지영 · 김희정 · 구자근 김상훈 • 이용선 • 이재명 조정식 • 한정애 • 유후덕 위성락 • 권칠승 • 이재정 이재강 · 김준형 · 홍기원 우워식 • 이학영 • 정청래 김승원 · 강선우 의원 (191인)

## 제안이유

2025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도모하려는 것임.

#### 주요내용

- 가.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(이하 "정 상회의"라 한다)의 관련시설을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·주변공원 ·주차장 등 회의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, 그 밖에 정 상회의와 관련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함(안 제2조).
- 나. 정상회의 개최를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정상회의 준비위원회(이하 "준비위원회"라 한다)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5조).
- 다. 준비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의 실무지원단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(안 제6조).
- 라. 준비위원회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·법인·단체 등에 행정적·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 및 제8조).
- 마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국·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·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).
- 바. 준비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

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상회의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관계 행정기관·공공기관·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정상회의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2조 및 제13조).

- 사. 경주시장에게 특별교통·숙박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특별교통·숙 박대책본부를 구성·운영하도록 함(안 제14조).
- 아. 준비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등을 광고 그 밖의 영리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, 준비위원회 가 아닌 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(안 제15조 및 제16조).
- 자. 이 법의 유효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함(부칙 제2항).
- 차. 대통령훈령 제459호 「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설 치된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이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봄(부칙 제3항).

#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2025년에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되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 함으로써 아·태지역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정상회의 관련시설"이라 함은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(이하 "정상회의"라 한다) 에 사용되는 회의장 시설과 진입도로·주변공원·주차장 등 회의장 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, 그 밖에 정상회의와 관련이 있 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- 제3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 중 정상회의 관련시설의 설치·이용 에 관한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.
- 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 참석자가 이용할 숙박시설, 교통시설 및 관광 편의시설 등의 설치·확충 또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5조(정상회의 준비위원회) ① 정상회의의 차질 없는 준비와 개최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상회의 준비위원회(이하 "준비위원회" 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준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- 1.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
  - 2.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인력·장비·시설 등의 확보· 운영
  - 3. 정상회의의 준비와 준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ㆍ집행
  - 4.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의 업무 조정 및 협조
  - 5.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협조
  - 6. 정상회의의 개최에 관한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
  - 7.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조사 · 연구 · 자료수집 등 지원
  - 8. 정상회의의 사후 정리ㆍ평가 및 보고
  - 9. 그 밖에 정상회의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사항
  - ③ 준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며 그 밖
  - 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
  - 1. 기획재정부장관
  - 2. 교육부장관
  - 3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- 4. 법무부장관
- 5. 국방부장관
- 6. 행정안전부장관
- 7. 문화체육관광부장관
- 8. 농림축산식품부장관
- 9. 산업통산자원부장관
- 10. 국토교통부장관
- 11. 해양수산부장관
- 12. 중소벤처기업부장관
- 13. 경주시장
- 14. 경상북도지사
- 15. 정상회의 개최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- ④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정상회의 실무지원단) ①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준비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준비위원회에 정상회 의 실무지원단(이하 "실무지원단"이라 한다)을 둔다.
  - ② 실무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고, 단장은 외교부차관이 된다.
  - ③ 실무지원단의 단장은 준비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- ④ 실무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
- 1.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지원
- 2.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실무지원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- ⑤ 준비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비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실무지원단에 둘 수 있다.
- ⑥ 준비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실무지원단에 둘 수 있다.
- ⑦ 그 밖에 실무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.
- 제7조(국가 등의 지원) ① 준비위원회는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(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·법인·단체 등에 행정적·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그 밖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해당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수 있다.
  - 1. 정상회의 기반사업 조성
  - 2. 정상회의 회의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

- 3. 정상회의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·보수
- 4. 그 밖에 정상회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상회의 관련시설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상회의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시행할 수 있다.
- ④ 국가,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상회의 계획에 따라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- 제8조(기부금품의 접수) ① 준비위원회는 「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국유·공유재산의 대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준비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·공유재산 을 「국유재산법」, 「물품관리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법」에도 불구하고 무상으로 대부·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 용품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·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

- 는 경우에 그 내용·조건·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 청과 준비위원회의 계약으로 정한다.
- 제10조(기념주화 발행)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.
- 제11조(기념우표 등의 발행) 준비위원회는 정상회의를 홍보하거나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
- 제12조(공무원의 파견요청 등) ① 준비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행정 기관과 정상회의에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「국가공무원 법」 제2조제2항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과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준비위원회가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,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수행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·파견하여야 하며, 파견기간 중파견근무를 해제하려면 준비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  -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,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사람에 대하여 승진·전보·교육·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- ④ 준비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

행정기관,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.

- 제13조(자료의 제공요청) ① 준비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·공공기관·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정상회의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·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14조(특별교통·숙박대책 수립) ① 경주시장은 특별교통·숙박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② 경주시장은 특별교통 · 숙박대책본부를 구성 · 운영한다.
  - ③ 경주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특별교통·숙박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특별교통대책본부에의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5조(정상회의 휘장 등의 사용) 준비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또는 이 와 비슷한 것으로 정상회의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,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와 「상표법」 및 「디자인보호법」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6조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이 법에 따른 준비위원회가 아닌 자는 준비위원회의 승인 없이 2025년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

(APEC) 정상회의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17조(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) 준비위원회의 임직원과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준비위원회에 파견된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18조(벌칙)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19조(과태료) ① 제1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부과 · 징수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권리·의무 등의 승계) 대통령훈령 제459호 「2025년 아시아태 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설치된 준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이 정상회 의 준비와 관련하여 직무상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.